

1. 도정의 비전과 추진전략

도정 비전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도정 방침

인간의 존엄

도정 목표

※ 5대 강원 중심시대

남북교류와
평화 경제
중심

북방경제를
넘어
대륙 중심

첨단화로
4차산업혁명
중심

일자리 &
경제
사람 중심

포스트
올림픽
관광·문화
중심

2021년도 도정방향 및 추진전략

1 2021년 도정방향

■ 민선 7기 4년차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나가는 내실 있는 도정 성과 창출을 통해 새로운 강원 도약 전기 마련

- '방역과 경제' 병행 추진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주력
- 도 경제·산업구조 전반의 온라인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도정의 역량 집중
- 주요 SOC, 공약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

2 핵심목표와 추진전략

도정 핵심목표 ⇨ **재난·경제 극복 + 4차 산업혁명 촉진**

* 핵심 달성지표 : 고용율 63%, 1인당 GRDP 32,801천 원, 수출액 21억불

핵심 추진전략 ⇨ **5대 분야 19개 과제**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강화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지역산업
체질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강원형 일자리
확대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평화경제 실현

- ▶ 액화수소, 수열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
- ▶ 신바이오 산업 육성 및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실현

- ▶ 미래 첨단산업(전기차,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육성
- ▶ 경제구조의 온라인 디지털 가속화
- ▶ 관광, 문화, 농정, 수산, 산림 등 지역 산업구조 체질 개선

- ▶ 육아기본수당 확대, 농어업인 수당 신설 등 복지공동체 구현
- ▶ 행복하고 건강한 삶 여건 조성

- ▶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전 강화
- ▶ 전략적 투자유치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SOC 사업 확대

- ▶ 남북 평화경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 ▶ 평화지역 활성화, 폐광지역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 ▶ 올림픽 유산 계승·발전(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등)

2. 2021년 재정운영 방향

재정여건

- 세입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증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소비세가 큰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고보조사업이 큰 폭으로 늘어 전년대비 증가
- 세출수요는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된 경제·사회적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을 통해,
-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 필요

중점 편성방향

- 민선 7기 4년차, ‘방역과 경제’ 병행 추진을 통한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집중 투자
-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의 온라인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 평화경제 기반 구축
- 중앙정부 지원 국비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분 전액 반영
-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및 행사·축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분야별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① 4차 산업혁명 본격대비 첨단산업 육성

- 도민 중심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
-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17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365
- e-mobility 산업 육성 140
-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62
-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 33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63
-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60
-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 40
- 제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34

②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9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105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60
- 양양·원주공항 및 무역항 활성화 92
- 고성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 45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53
-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89
-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85
-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25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22

③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

- 평화지역 5개군 지역개발 지원 841
-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100
-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93
-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4
- 평화누리길 조성 154
-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운영 35
- 평화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20
- 군장병 생활SOC 확충 8

④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219
-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94
- 생계급여 지원 1,965
- 기초연금 지원 6,580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64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683
- 영아보육료 지원 1,099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4

⑤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 1,330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66
- 받기반 정비 사업 92
- 연안정비 52
- 농어업인 수당 지원 357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90
- 어촌뉴딜300 215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6

⑥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 지방도 확·포장 500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9
-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35
-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13
- 도시재생 뉴딜 사업 440
-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지원 134
-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25
- 강원권 관광도로 실행계획수립 용역 2

⑦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 재해위험지역 정비 752
- 국가예방접종 실시 146
-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80
- 소방청사 신증축 77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87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00
- 하천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506
- 소방차량 교체 보강 86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397
- 체육진흥시설 지원 312

⑧ 기타 사업

- 강원도개발공사 재정보전 78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122
-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 26

3. 2021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1 기준경비 관련

1 대민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명확화 [별표2]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가능하도록 지급대상 명확화
- 임기제 공무원 중 대민활동비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 보완

현 행	개 정
<p>6. 특정업무경비</p> <p>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p> <p>② 지급대상 :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주』</p> <p>5)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p>	<p>6. 특정업무경비</p> <p>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p> <p>② 지급대상 :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p> <p>*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주』</p> <p>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p>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인상 [별표5]

-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현 행	개 정
<p>② 기준액 : 2020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3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p>	<p>② 기준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p>

1 지방자치단체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 관련 제도개선

- 자치단체 강연료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국회 추경예산 관련 부대의견)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9. 행사실비 지원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301 일반 보전금	09. 행사실비 지원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예산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2 공공운영비에 공무원 책임보험 명시

- 예산편성 시 '공공운영비' 세출과목으로 공무원 책임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

현 행		개 정	
201 일반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아. 기 타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201 일반 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아. 기 타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공무원 책임보험료, 기타보험료

3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4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 개선

-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사전의결을 미리 얻을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중략)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생략)	306 출연금	01.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중략)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 출연 및 연례적 반복적 출자 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생략)
	502 출자금		502 출자금
	1. 용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중략)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1. 용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중략) 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 출연 및 연례적 반복적 출자 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5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과목 신설

- 시·군·구의 고교무상교육경비 전출금 편성을 위해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308-09) 통계목 신설
 -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703-01)이 자치단체 내 내부거래 과목이므로 시·군·구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별도의 통계목 필요

현 행		개 정	
308 자치 단체 등 이전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 자치 단체 등 이전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9.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부담경비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1. 기타부담금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 기타부담금

6 자치단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선교부 관련 개선

-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의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과다 편성, 사업 실적과 무관한 대행사업비 과다 선교부 사례 지적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 상황, 그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집행하도록 명시

현 행		개 정	
308 자치 단체 등 이전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308 자치 단체 등 이전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u>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u>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403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403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u>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필요</u>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7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을 통상적인 예치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 '의무예치금' 통계목은 '재난관리기금'에 한정하여 활용

※ '의무예치금'은 시행령상 일정 요건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활용 불가

현 행		개 정	
602 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602 예치금	01. 일반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602 예치금	02. 의무예치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예치·관리

8 회계간 예수·예탁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20.6.9.)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 재원을 예탁·예수 가능해짐에 따른 후속조치

현 행		개 정	
705 예수금 원리금 상환	01. 예수금원금 상환	705 예수금 원리금 상환	01. 예수금원금 상환
	1. 일반회계와 <u>기타특별회계</u> ,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u>기타특별회계</u>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 내부거래 >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현 행	②예탁 예수금 일반/기타 기금	704-00 예탁금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22-01 예수금수입
		<이하 생략>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③예탁 예수금 상환	일반/기타 공기업/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기타 /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구 분	세 출(주는회계)		세 입(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②예탁 예수금	일반/특별 기금	704-00 예탁금	일반/특별 /기금	722-01 예수금수입
		<이하 생략>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③예탁 예수금 상환	일반/특별 /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일반/특별 /기금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이하 생략>	<이하 생략>	

9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반영

- 「지방재정법」 개정(20.6.9.)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반영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현 행		개 정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한도 범위 내 편성 필요)

10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

-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관(230) 신설을 통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
 - ※ (기존) 경상적 세외수입(210), 임시적 세외수입(220) → (개선) 임시적 세외수입(220) 관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 관을 분리 신설
- 현행 '그외수입(224-06)'으로 분류된 세입 중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과·징수근거가 있는 경우 분리·관리하여 세입관리의 효율성 제고

현행				개정			
과목 구분		현행 과목구분 설정		과목 구분		개정 과목구분 설정	
관	항목	세목		관	항목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01	국유재산 임대료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01	국유재산 임대료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u>사용료</u>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u>대부료</u>
	02	공유재산 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02	공유재산 임대료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u>사용료</u> 2.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u>대부료</u>
212 사용료수입				212 사용료수입			
	01	도로 사용료	1. 도로사용료수입		01	도로 사용료	1. <u>도로점용료수입</u> 2. <u>도로통행료수입</u>
	02	하천 사용료	1. 하천사용료수입		02	하천 사용료	1. <u>하천점용료수입</u> 2. <u>하천수사용료수입</u>
	03	하수도 사용료	1. 하수도사용료수입		03	하수도 사용료	1. <u>하수도점용료수입</u> 2. <u>하수도사용료수입</u>
	04	상수도 사용료	1. 상수도사용료수입		04	상수도 사용료	1. <u>상수도요금수입</u>
	05	시장 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05	<u>공유수면 사용료</u>	1. <u>공유수면점용료</u> 2. <u>공유수면사용료</u>
	06	도축장 사용료	1. 도축장사용료수입				

현행			개정			
	07	입장료 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06	시장 사용료	1. <u>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u>
	08	기타 사용료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증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07	입장료 수입	1.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 수수료수입			
	01	증지수입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01	증지수입	현행과 동일
	02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02	<u>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u>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03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03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현행과 동일
	04	기타 수수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04	<u>보건의료 수수료</u>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검사 수수료 수입
	05			05	기타 수수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 수입
214 사업수입			214 사업수입			
	01	사업장 생산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01	사업장 생산수입	현행과 동일
	02	주차요금 수입	1.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02	청산금 수입	현행과 동일
	03	통행료 수입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수입	03	매각 사업수입	현행과 동일
	04	청산금 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05	분담금 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06	매각 사업수입	1. 주택, 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현행				개정			
	07	배당금 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04	배당금 수입	현행과 동일
	08	의료사업 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05	기타 사업수입	현행과 동일
	09	기타사업 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01	징수 교부금 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4. 부담금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01	징수 교부금 수입	현행과 동일
216 이자수입				216 이자수입			
	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 공공예금이자수입		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 공공예금이자수입
	02	민간 용자금 회수 이자수입	1. 민간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2	용자금 회수이자 수입	1. 민간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3	통화 금융기관 용자금 회수 이자수입	1. 통화금융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4	공사공단등 용자금 회수 이자수입	1. 공사공단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출자출연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3. 공사공단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05	시·군·구 용자금 회수 이자수입	1. 시·군·구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06	기타이자 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03
220 임시적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01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01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현행			개정				
	02	시·도유 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02	시·도유 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 시·도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현행과 동일
	04				04	불용품 매각대금	1. 불용품의 매각수입
222 부담금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01	자치단체간 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01	자치단체간 부담금	1.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02	일반 부담금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23 보조금반환수입				
	01	과징금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01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02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 시·도, 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4 기타수입			224 기타수입				
	01				01	체납처분 수입	현행과 동일
	02				02	보상금 수납금	현행과 동일
	03				03	기부금 수입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04	지적 재조사 조정금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수입
	02	이행강제금		05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액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의 보전을 위해 시·군에 납입되는 금액
	03	변상금		06	위약금	1. 위약금 수입
	04	위약금		07	그외수입	현행과 동일
	05	과태료		225 지난연도수입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01	지난연도 수입	현행과 동일
224 기타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1	불용품 매각대		231 과징금		
	02	체납처분 수입		01	과징금	1. 과징금 수입
	03	보상금 수납금		232 이행강제금		
	04	시·도비 반환금 수입		01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 수입
	05	기부금		233 변상금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01	변상금	1. 변상금 수입
				234 과태료		
				01	차량관련 과태료	1.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02	기타 과태료	1. 기타 과태료 수입

현 행				개 정			
		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지원금	235 환수금			
		225 지남년도수입		1	부정이익 환수금	1.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등을 환수한 수입 2.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수입	
	01	지남년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236 부담금			
				01	부담금	1. 부담금 수입	

3 기타 보완사항

1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별표13]

-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 법 제14조(제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등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2 예산의 변경(전용·이체) 제도의 사후장치 마련 [별표13]

- 「지방재정법」 개정(20.6.9.)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전용·이체 후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현 행	개 정
<p>3. 예산의 변경</p> <p><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3. 예산의 변경</p> <p><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u>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u> <p style="text-align: center;">*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제한 : <u>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이체</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이체</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u>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u> <p style="text-align: center;">*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체내역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③ (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삭제된 예산편성절차 관련 규정 보완

- 예산편성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V.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수록

예산편성 참고자료
<p>제1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조(예산요구서) ① 제1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p> <p>③ 관재업무담당과장(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처(국·과)장,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4조(예산안의 편성) ① 도지사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p>
<p>제5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예산편성 참고자료

- ②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 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참고자료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기금분야

1 예비비 편성 금지

- 기금운용계획상 예비비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신설)

현 행	개 정
⑥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input type="checkbox"/> 기본원칙 <신 설>	④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input type="checkbox"/> 기본원칙 ○ <u>예비비 편성 금지</u> - 「지방기금법」상 예비비 편성 근거조항이 없으며,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이므로,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 가능

2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을 통상적인 예치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

※ '의무예치금' 통계목은 '재난관리기금'에 한정하여 활용

※ '의무예치금'은 시행령상 일정 요건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활용 불가

현 행	개 정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600 보전재원</td> <td></td> </tr> <tr> <td style="width: 15%;">602 예치금</td> <td>1.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td> </tr> </table>	600 보전재원		602 예치금	1.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600 보전재원</td> <td></td> </tr> <tr> <td style="width: 15%;">602 예치금</td> <td> 01. 일반예치금 1.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02. 의무예치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예치·관리 </td> </tr> </table>	600 보전재원		602 예치금	01. 일반예치금 1.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02. 의무예치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예치·관리
600 보전재원									
602 예치금	1.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600 보전재원									
602 예치금	01. 일반예치금 1.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02. 의무예치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예치·관리								

③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 규정 명확화

- 법령 또는 조례상 전출 근거가 있는 경우 타 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함을 명시

※ (현행) 기금의 전출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 질의가 많은 상황

현 행	개 정
<p>⑥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p> <p>■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p> <p><내부거래></p> <p>※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p>	<p>④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p> <p>■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p> <p><내부거래></p> <p>※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특성 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함에 유의</p>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구체화 Ⅰ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신설도 가능함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지방기금법」 제11조제1항)

※ (주요항목)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 단위사업·세부사업·목

현 행	개 정
<p>③ 기금운용계획 수립</p> <p>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p> <p>○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추 가></p>	<p>③ 기금운용계획 수립</p> <p>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p> <p>○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사업·세부사업·목 신설 포함)</p>

5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구체화 Ⅱ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책사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3개의 총액으로 혼동할 소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미를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

현 행	개 정
<p>㉓ 기금운용계획 수립</p> <p>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p> <p>*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u>정책사업을 의미(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포함)</u></p>	<p>㉓ 기금운용계획 수립</p> <p>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p> <p>*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u>정책사업에 해당(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참조)</u></p>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예시 구체화

현 행	개 정
<p>㉓ 기금운용계획 수립</p> <p>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1 : A정책사업 10억 + 재무활동 10억으로 구성된 기금의 경우></p> <p>①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p> <p>②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3억 증가 : 의결 필요</p> <p>③ 정책사업 3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p> </div>	<p>㉓ 기금운용계획 수립</p> <p>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시1 : A정책사업 10억 + 재무활동 10억으로 구성된 기금의 경우></p> <p>①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p> <p>② <u>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1억 감소</u> : 의결 불필요</p> <p>※ (예) 예치금을 축소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p> <p>③ 정책사업 1억 증가, 재무활동 2.5억 증가 : 의결 필요</p> <p>④ 정책사업 2.5억 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p> </div>

6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예치금의 상위 개념) 금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

현 행	개 정
<p>㉓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p> </div>	<p>㉓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3.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예치금(지출 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단, '재무활동'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함)</p> </div>

- 예치금 항목 조정 관련 문구 명확화(결산 → 연도말)

현 행	개 정
<p>㉔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input type="checkbox"/>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⑥ 예치금 ○ 결산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p>	<p>㉔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input type="checkbox"/>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⑥ 예치금 ○ 연도말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p>